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신청 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을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3호) 전단 중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을 “같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라 선순위 유족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록신청 등) ① (생 략)	제6조(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u>다 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 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4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 다)가 한다. <단서 신설></u>	② ----- <u>특 수임무유공자 또는 법 제4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u> ----- ----- ----- ----- <u>. 다만, 같은 순위의 유 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1. <u>특수임무유공자</u>	<u><삭 제></u>
2. <u>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 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특수임무유 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한다.</u>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 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 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u><신 설></u>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수 준이 낮은 사람을 선순위 유 족으로 한다. 이 경우 생활수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③ (생 략)	<u>준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u> 1. 같은 ----- ----- ----- ----- ----- ----- ----- -----. 4. 제3호에 따라 선순위 유족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5442